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특약 약관

[신상품]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목 차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3
제 2 조 【특약의 효력】.....	3
제 3 조 【특약의 소멸】.....	4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
제 5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4
제 6 조 【준용규정】	5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이 특약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 금액 중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적용대상 정산액(이하 「정산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 2 조 【특약의 효력】

- ①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때(이하「체결일」이라 합니다)부터 보험계약은 정산액을 일시에 납입한 것과 동일한 계약 변경 효력을 가집니다.
- ② 계약자는 정산액을 대신하여 분할납입기간 동안 분할납입금액에 체결일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이하 「최종분할납입금액」이라 합니다)을 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납입금액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③ 제 2 항의 납입기일은 체결일 이후부터 도래하는 보험계약 약관의 납입기일로 합니다.
-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 완료 이전에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

을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⑦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제 4 항 내지 제 7 항에 따라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직전 최종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3 조 【특약의 소멸】

①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제 2 조(특약의 효력) 제 8 항에서 정한 일시 납입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이 때, 연체된 분할납입금액에 대한 연체이율은 체결일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규정을 따릅니다.